

## 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,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역학조사반원 인원 조정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등 외에 감염병의심자도 포함하도록 규정(안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)
- 나.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반원 구성 인원 조정 근거 마련(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제5호 신설)
- 다. 감염병 유행 장기화 또는 환자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을 개정(안 별표 1의3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감염병환자등”을 각각 “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20명 이내”를 “10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감염병의 유행 시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별표 1의3 제1호가목2)다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의3 제1호마목 중 “의료기록”을 “진료기록부등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2)가) 중 “의무기록”을 “진료기록부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<u>감염병환자등</u> 의 인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<u>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<u>감염병환자등</u> 에 관한 진료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<u>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</u> -----<br>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5조(역학조사반의 구성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5조(역학조사반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, 시·도역학조사반 및 시·군·구역학조사반은 각각 <u>20명 이내</u> 의 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 <u>10명 이상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중에서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④ (생략)

[별표 1의3] 역학조사의 방법(제14조 관련)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

가.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

1) 설문조사

가) ~ 라) 생략

2) 면접조사

가) ~ 나) 생략

다)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.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감염병의 유행 시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의3] 역학조사의 방법(제14조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1) (현행과 같음)

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

2) (현행과 같음)

가) ~ 나) (현행과 같음)

다) -----  
-----  
-----.

다만, 면접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

마.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 
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이  
 병원·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,  
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, 임상  
 양상, 치료결과, 타인으로서의 확  
 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 
 감염병환자등의 의료기록을  
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  
 할 수 있다.

2.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 
 방법

가.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 
 자에 대한 조사

1) 가), 나) 생략

2)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 
 이상반응 발생 및 임상 경과  
 파악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  
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)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의무  
기록 확인과 담당 의사의  
 면접

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 
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,  
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 
실시할 수 있다.

마. 진료기록부등-----

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

-----진료기록부등-----

-----  
 --.

2.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1) 가), 나) (현행과 같음)

2) (현행과 같음)

가) ----- 진료기록  
부등-----  
 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나)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)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<br>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<br>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의<br>무기록 확인 | 다) -----<br>-----<br>----- <u>진료</u><br><u>기록부등</u> ----- |
| 라)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| (043) 719 - 7136 |